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71813 판결 [매매대금청구 독촉사건]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5. 26. 선고 2021가소13808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 11. 18.경 피고가 원고 운영의 'C(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쇼핑몰의 온라인 판매·배송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업무를 대금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9. 11. 18.부터 2021. 11. 17.까지로 정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C 시스템 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달 19. 피고가 위 C의 화장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및 내용 정리 작업을 대금 4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화장품 페이지 디자인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C 시스템 관리 계약 대금으로 50만 원씩 4회, 합계 200만 원을, 화장품 페이지 디자인 계약 대금으로 253만 원씩 2회, 합계 506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화장품 페이지 디자인 계약에 따라 C의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고, C의 화장품 상세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C의 판매·배송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도 불가능하여 위 관리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위 각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용역계약대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합계 70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C 시스템 관리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을 제4, 6,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량, 판사 김나연, 판사 박준규